신기술 및 응·복합제품 신속확인 업무 지침

제정 2022. 10. 31. 개정 2024. 7. 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신청인"이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 2. "신속확인기관"이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8항에 따라 신속확인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진흥원을 말한다.
- 3. "신기술 제품"이란 기존 기술을 개선·개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말한다.
- 4. "융·복합 제품"이란 정보보호 기술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 또는 기존의 여러 정보보호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 5. "보안 점검"이란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 취약점과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조치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 6. "기능 시험"이란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기능 정확성 및 적절성을 사전에 시험하는 과정을 말한다.
- 7. "신속확인심의위원회"란 신속확인 신청 제품의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신속확인 절차)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신속확인 대상검토 및 사전준비

- 제4조(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① 신청인은 신청 제품에 대한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기능설명서를 작성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 ②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기능설명서를 바탕으로 신속확인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신속확인 대상 제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파일 등 평가기준 부재로 기존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제도에서 평가 불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 2. 제품의 형태이며, 주요기능이 정보보호 기능인 제품
- ③ 진흥원은 신속확인 대상여부 판단 시 제품 기능설명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된 제품 기능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확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원은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가 완료된 경우 신청인에게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속확인 대상 신청인에게 신속확인 절차를 안내한다.
- ⑥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이 보안 점검 또는 기능 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품의 신속확인 대상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제5조(보안 점검) ①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1. 「정보보호산업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2.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 3.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CC평가기관)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중 '정보보호 SW'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정 받은 기관(GS인증기관)
 - ②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제1항, 제2항 각 보안 점검의 세부항목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시험) ①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KOLAS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받은 기능 시험만 유효하다.
 - 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ISO/IEC 25023)
 - 2.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ISO/IEC 25051)
 - ② 기능 시험 확인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GS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제 3 장 신속확인 신청 및 접수

제7조(신속확인 신청)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신속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 1.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속확인 신청서
 - 2.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품 기능설명서
 - 3. [별지 제1호 서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 4.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 5. [별지 제3호 서식] 기능 시험 확인서(또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6.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7.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준수사항 서약서
 - 8. [별지 제5호 서식] 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 제8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확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신속확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신청서류 사전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운영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기술자문기관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 기술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신속확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를 둔다. 위원장은 진흥원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진흥원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 의무)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확인 여부를 심의한다.
 - 2. 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 3. 위원은 신속확인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할 수 없다.
 - 4. 위원은 신속확인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5. 위원은 신속확인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은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보안 의무 준수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 신속확인심의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 제11조(위촉 취소 및 보궐위원 위촉) ① 진흥원은 심의위원이 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심의 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촉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궐위원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 1. 심의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되어 위촉이 취소된 경우
 - 2. 심의위원회 사임, 퇴직, 이직, 해임,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위촉이 취소된 경우
 - 3. 심의위원이 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촉이 취소된 경우
 - 4. 기타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제첩·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심의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심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3. 심의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4. 심의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심의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신속확인 신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의 적합 여부
 - 2. 신속확인 제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3. 신속확인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신속확인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진흥원은 안건에 따라 월1회 또는 수시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일시, 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은 회의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안내한다.
 - ③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신속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신속확인 심의·의결) ① 진흥원은 신속확인 신청서류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경우 신속확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신청인은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속확인 신청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 ③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류와 신청인의 설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항목별 세부기준은 [별표2]의 신속확인 심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 1.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해당 여부
 - 2. 제품의 기능(기능 정확성, 기능 적절성)
 - 3. 제품의 안전성(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개발 및 생산방식)
 - 4. 제품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 ④ 각 심의위원은 신청 제품에 대하여 각 항목을 심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신속확인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 ⑤ 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작성한 신속확인 심의의견서에 근거하여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속확인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때 심의 결과서의 종합의견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한다.
 - ⑥ 진흥원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완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확인서 발급 및 관리

- 제15조(확인서 발급) 진흥원은 제품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유효기간 2년의 신속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16조(확인서 재발급·변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확인서 보유기관이 재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확인서 보유기관에 확인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 1. 확인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2. 확인서 보유기관이 회사명, 대표자명 등의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단, 양도·양수 제외)
 - 3. 확인서 보유기관의 회사유형을 변경한 경우
 - 4. 확인서 보유기관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확인서 재발급 또는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별표3] 신속확인서 재발급·변경 요청 시 구비서류 목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확인서 재발급·변경 신청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서 보유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재발급·변경을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확인서 관리) ① 진흥원은 발급된 확인서의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고 확인서 발급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제품 정보(제품명, 모델명, 제품군, 주요기능 등)
 - 2. 기업 정보(신속확인서 보유 기업명 등)
 - 3. 발급 정보(신속확인서 관리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 4. 기타 홈페이지에 게시가 필요한 사항
 - ② 진흥원은 신속확인서 정보 및 신속확인을 통해 받은 제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속확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6 장 사후관리

- 제18조(형상관리) ① 진흥원은 신속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 전까지 신속확인 제품의 형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품에서 취약점 발견 또는 보안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확인을 받은 자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진흥원으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기간은 조치 범위를 고려하여 진흥원과 협의하는 기간에 따른다.
- 제19조(변경승인) ①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신속확인 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 2. 신규 취약점 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한 부분을 조치한 경우
 - 3. 신속확인 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 4. 신속확인 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 5. 기타 각 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품의 주요 기능에 변경이 없어야 하며, 진흥원은 변경승인 신청 제품의 주요 기능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
 - ③ 변경승인 신청 시 제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신속확인 제품 변경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신청서(변경승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은 사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 제1항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보안 점검을 받고 다음 각 호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결과확인서 또는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 ⑤ 진흥원은 변경승인 신청서와 제출물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 신속확인서 발급 정보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신속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에 발급된 신속확인서의 기간을 유지한다.

- 제20조(유효기간 연장) ①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에 변경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까지 사후관리 신청서(유효기간 연장)를 제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기존제도 평가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 ③ 기존제도 평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인은 사후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결과확인서 또는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 ④ 진흥원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의 보안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연장된 신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 제21조(신속확인 정지) ① 진흥원은 신속확인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속확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신속확인서 효력 정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신속확인 받은 제품의 형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2. 신속확인 제품의 오남용이 확인된 경우
 - 3. 진흥원에게 조치를 요청받고 협의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②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속확인 정지 안건 심의 시 [별지 제9호 서식] 신속확인 정지·취소·이의신청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 ③ 진흥원은 신속확인 정지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효력 정지된 제품에 대해 정지 기간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22조(신속확인 취소) ① 진흥원은 신속확인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속확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신속확인 제품 취소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속확인 제품을 취득한 경우
 - 2. 신속확인 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3. 신속확인 제품의 효력 정지 처분 기간 내에 효력 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속확인 취소 안건 심의 시 [별지 제9호 서식] 신속확인 정지·취소·이의신청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 ③ 진흥원은 신속확인 취소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신속확인 취소 처분서 발급한다.
 - ④ 신속확인이 취소된 제품은 홈페이지의 신속확인 제품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공지한다.
- 제23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2. 신속확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3. 신속확인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4. 이 외에 신속확인 과정에서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 시 [별지 제9호 서식] 신속확인 정지·취소·이의신청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활성화

- 제24조(신속확인 제품 도입) ①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 편성에 따라 '나'그룹 또는 '다'그룹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개발 촉진,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속확인된 정보보호제품의 우선적인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5조(신규기준 마련) ① 진흥원은 신속확인된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한 인증·평가 기준 개발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신규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속확인서의 효력은 신속확인된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8 장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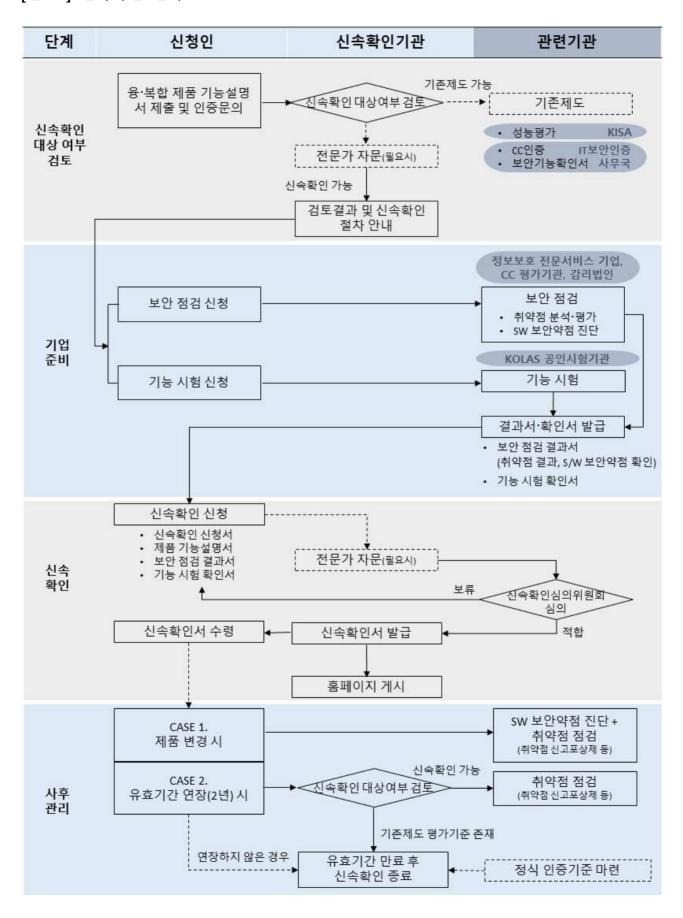
- 제26조(수당 지급)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신속확인 업무에 참여한 자문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또는 온라인 심의·의결 시에도 심의위원회 개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 엄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속확인 업무 담당자, 심의위원, 보안성 점검기관, 기능 시험 기관의 점검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청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가이드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속확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신속확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속확인 절차



[별표2] 신속확인 심의 세부기준

심의	의항목	세부기준	검토자료
1.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해당 여부		o 신기술 및 용·복합 정보보호제품* 해당 여부 - 평가기준 부재로 기존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제도 에서 평가 불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 (예시) AI기반,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제품 O 제품의 형태, 정보보호 기능 제품 해당여부 - 모듈, 기능 등의 형태가 아닌 완제품의 형태여야하며, 주요기능이 정보보호 기능인 제품	기능설명서
2. 제원	품의 기능	o 기능설명서에 작성한 모든 기능의 정상 구현 여부 o 구현된 기능의 정상 동작 및 정확한 결과 제공 여부	기능설명서, 기능 시험 확인서 (GS인증서)
3.1 취약 주 분석·평		o 유효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제출 여부 -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을 통해 발급받은 자료 여부 -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 여부 o 제품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취약점을 적절히 조치하였는지 여부	분석·평가
3. 제품의 안전성	3.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o 유효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제출 여부 -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 소속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발급받은자료 여부 -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자료 여부 o 최초진단 시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점검까지 수행하였는지 여부 	SW보안약점 진단 결과
	3.3 개발 및 생산방식	o 제품의 개발 방식이 독자적이거나, 공동·위탁 개 발한 경우 업체와의 계약, 개발 프로세스, 운영조 직 등의 적절성 여부 o 제품의 생산 방식이 자체적이거나, 위탁 생산한 경우 업체와의 계약, 생산 프로세스, 운영조직 등의 적절성 여부	신청서,
4. 제품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o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장애대웅 등 유지보수 체계, 방법, 절차의 적절성 여부 o 제품에 대한 신규 취약점 점검 및 발견 시 조치 방안의 적절성 여부	기능설명서

[별표3] 신속확인서 재발급·변경 요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 · 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회사명 등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신속확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속확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으로 기재사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 · 합병 공중계약서 사본 1부(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 신속확인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페이지(1)/(총N)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 1. 제품명(모델명):
- 2. 취약점 점검 기간

o 최초 점검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o 이행 점검 : 20 년 월 일

- 3. 취약점 점검자
- o 점검자 :
- 4. 취약점 점검 결과 :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여부	결함	비고

20 년 월 일

취약점 점검기관의 장

직인

페이지(2) / ((き	N,) 페이	ス
" 1 1	_	, , ,		_ T M	, "	, ,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사항

□ 저	품	정보
-----	---	----

- o 소프트웨어(해당시):
- o **하드웨어**(해당시) :
- o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해당시):
- □ 취약점 점검도구

도구명	제조사	버전정보	비고

□ 취약점 점검 세부 결과

구분	취약점 점검 항목	점검 여부	결함	조치내역

- o 취약항목(제품 구성항목/점검대상):
- o 취약점 점검 결과 :
- o 조치방법 및 결과 :

페이지(1)/(총N)페이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 1. 제품명(모델명):
- 2. 제품 정보o 개발언어 :
-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간
- o 최초 진단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o 이행 진단 : 20 년 월 일
-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 o 진단원 :
-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 :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여부	결함	비고

20 년 월 일

보안약점 진단기관의 장

직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세부사항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
--------	------	------

도구명	제조사	버전	비고

□ 소프트웨어 별	1안약점	진단	결과
-----------	------	----	----

전	.체 파일수	소스코드 라인수	취약한 파일수	보안약점 수	비고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세부 결과

점검항목	점검여부	결함	비고

- o **결함항목**(제품 구성항목) :
- o 결함내용 :
- o 조치방법 및 결과 :

페이지(1)/(총N)페이지

기능 시험 확인서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

주소:

- 1. 제품명 :
- 2. 모델명 :
- 3. 기능 시험 기간
- o 점검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4. 기능 시험 점검자
- o 점검자 :
- 5. 기능 시험 결과 :

평가항목	전체 기능 수	시험 기능 수	결함 수	비고
기능 시험				

20 년 월 일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장

직인

					페이지(2)	/ (총	· N) 페이지
		기능 시	험	세부시	사항		
□ 제품 정보	<u>1</u>						
□ 제출물 정	□ 제출물 정보						
□ 운영 환경	}						
□ 시험 장소	2						
□ 시험 환경	}						
	네트워크 구성도						
□ 시험 장ㅂ	l(도구)						
장비	명	제조사		버전	목적		비고
□ 시험 세부	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시험수행	Ę	열함
계		전체 기능 000)개		000개) 00건
□ 기능 결힘) 항목						
대분류		중분류			결함 조치사항		

신청인 준수사항 서약서

본인은 신속확인 신청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과 윤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를 서약합니다.

- 1. 신속확인 신청 절차를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2. 신속확인 신청 제품은 아래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합니다.
- 비밀번호 및 암호화 키가 은닉되거나 하드코딩 되어있지 않음.
-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음.
- 제품 기능설명서에 기술된 방법 이외에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3. 신속확인서 발급 이후 식별되는 제품의 취약점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4. 공급망 보안강화를 위하여 국내/국제사회의 무역 제재 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신청 제품의 개발·유통 과정에서 국내/국제사회의 제재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5. 신속확인 신청 제품의 보안 점검, 기능 시험 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을 통하여 점검·시험 받았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기업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본인은 신청한 제품이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해시값 정보 보관 및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속확인 제품의 설치이미지(펌웨어), 설치파일(스크립트 포함)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고 보관함에 동의합니다.
- 신속확인 제품의 형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 점검 기관(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감리법인, CC평가기관), 기능 시험 기관(KOLAS 공인시험기관), 제품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요청 시에 보관중인 해시값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 신속확인 발급 사실의 홈페이지 공개

- 발급된 확인서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 신속확인 제품명 및 모델명, 제품군, 주요기능 등 제품 정보
 - 신속확인서 보유 기업명 등 기업 정보
 - 신속확인서 관리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발급 정보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기업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신속확인심의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9항,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 제도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과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속확인 심의의견서

접수번호:	심의일자:
신청기업:	신청제품:

심의	항목	세부심의내용	심의결과
1. 신기술 및 용·복합 제품 해당 여부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2. 제품	의 기능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3.1 취약점 분석·평가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3. 제품의 안전성	3.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3.3 개발 및 생산방식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4. 제품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종합의견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적합 <i>/</i> 보류 <i>/</i> 부적합

상기와 같이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의 신속확인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위 원 (서명)

페이지(1)/(총N)페이지

(서명 또는 인)

신속확인 제품 변경 영향분석서

 신속확인 제품 변경 영향분석서에 모든 변경 내역을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 자에 있다.
 변경 승인된 제품의 형상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신속 확인기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서약하며, 이후 형상변화 적발 시 신속 확인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년 월 일

1. 신속확인 개요

동의사항

- 가. 기업정보 (회사명, 작성자명 등)
- 나.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확인서 관리번호, 확인서 유효기간 등)

신청인(대표자)

2. 변경 내역(요약)

항목	기재 내용(요약)
1.	
2.	
3.	
4.	

3. 변경 상세내용

- 가. 신속확인 제품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 나. 변경 전/후 신속확인 제품의 비교
- 다. 변경 내용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도구, 결과 등)
- 라. 변경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별지 제9호 서식] 신속확인 정지·취소·이의신청 심의 결과서

접수번호:		심의일자:	
안건분류	□ 신속확인 정지 □	신속확인 취소	□ 이의신청
심의대상			
심의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사기이 가이 시소하이 계드	되러 /되기 키고 시시	x1 ⇒1\

상기와 같이 신속확인 제도 관련 (정지, 취소,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보고합니다.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장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신속확인 취소 처분서

신속확인 취소 처분서

관리번호	제 2000 - 000 호	
기업정보	회사명	대표자
신속확인 제품	제품명	모델명
취소 사유		

위 정보보호시스템은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신속확인 제도 업무 지침」제22조에 의거하여 상기과 같이 0000년 00월 00일자로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 제품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속확인기관의 장

직인